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25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9월 11일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055호)과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101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수정·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휴식 및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-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, 공원, 운동시설 등에 반려동물의 출입 및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주의사항 안내표지를 포함하여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‘공원 내 금지행위’에 대해 명시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, 공원 내 화장실,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(안 제22조의2 신설)
- 나.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함(안 제22조의3 신설)
- 다.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고,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(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)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안내표지 설치 등)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 내 화장실,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3(금주구역 지정) 시장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별표 6 제2호자. 근거법령란 기호(·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 및 제34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2조의2(안내표지 설치 등) ①</u> <u>시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</u> <u>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</u> <u>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②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</u> <u>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</u> <u>위해 공원 내 화장실, 매점 등에</u> <u>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</u> <u>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</u> <u>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</u> <u>한다. 다만, 이 경우 시민들의 이동</u> <u>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</u> <u>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2조의3(금주구역 지정) 시장은</u> <u>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에</u> <u>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</u> <u>따른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</u> <u>지정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시장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</u> <u>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</u> <u>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</u></p>

〈신 설〉

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